



명쾌한 수다

의료인은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한의원에서 환자인 B씨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B씨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B씨에게 한약을 배송하였습니다.

A씨처럼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가 아닌,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련 법조항부터 함께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A씨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대법원 관례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1.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법 영위는 환자의 권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침해 등으로 인해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원격의료는 의료인 vs 의료인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vs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3. 원격의료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볼 수 없다.

원격의료는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환자에 대한 정보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4.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위반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역시,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위 4가지 이유를 근거로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